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합53808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17나2005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합538088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최준용

피 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변 론 종 결 2016. 11. 21.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47,899,429원 및 그 중 657,2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4.부터, 190,649,429원에 대하여는 2015. 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D블록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3,14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2014. 8.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및 조적,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2,14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3. 14. C의 계약이행을 보증금액 657,25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고, 2013. 8. 13. E의 계약이행을 보증금액 2,145,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피고의 보증약관 제6조 제1항, 제2항은,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 후 C, E은 각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1. 8. C에 대하여, 2014. 1. 28. E에 대하여 각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각 통보서는 그 무렵 C, E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9,10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2014. 2. 2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게 나머지 습식공사 및 조적,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2,29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1,080,841,266원의 비용을, E의 채무불이행으로 190,649,429원의 비용을 각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C의 계약이행보증금 657,250,000원, E의 계약이행보증금 190,649,429원을 합한 847,899,429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당초 원고가 C, E과 약정하였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F, G과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 중 C, E과 체결하였던 각 하도급계약과 비교할 때 물량이 증가하였거나 새로 추가됨으로써 증가한 비용은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E과 체결하였던 각 하도급계약은 물량 변동을 전제로 하는 개산계약이므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하도급계약이 개산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견적일반조건은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변경 물량을 기준으로 수량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12, 13호증 중 견적일반조건 5.의 5) 참조},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서 물량을 먼저 정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물량에 따른 금액을 최종적인 공사대금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각 하도급계약이 개산계약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C, E과 체결한 보증계약이 개산계약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과 약정한 공사대금 중 잔대금은 6,608,703,429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원고가 F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중 물량이 증가하였거나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 액수는 5,556,416,040원인 사실, 원고가 E과 약정한 공사대금 중 잔대금은 1,711,011,283원, 원고가 I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중 물량이 증가하였거나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 액수는 1,110,518,8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E, I과 약정한 공사대금 중 잔대금의 액수가 원고가 F, I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중 물량이 증가하였거나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 액수보다 더 큰 이상 공사비용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라옥, 판사 이재욱, 판사 이인민